

#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. 2.

발 의 자 : 송옥주·박찬대·백혜련  
서형수·신경민·심재권  
유승희·윤관석·윤후덕  
이상헌·황주홍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라돈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,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·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고,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1항·제2항, 제52조의4).

##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령으로”를 “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(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국토교통부령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공사완료도서”를 “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, 공사완료도서”로 한다.

제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4(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기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[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(棟)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]한 경우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한다.

③ 실내공기질의 측정 항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 및 제5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 안
<p>제22조(건축물의 사용승인) ① 건축주가 제11조·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[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(棟)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]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(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)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</p>	<p>제22조(건축물의 사용승인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(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국토교통부령으로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사를 실시하고,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감리완료보고서,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

③ ~ ⑥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, 공사완료도서-----  
-----  
-----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52조의4(건축물의 실내공기질

기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[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(棟)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]한 경우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한다.

③ 실내공기질의 측정 항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